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머리말

지난 10년간 0.7%대에서 정체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최근 0.5%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 데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크게 기여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안전보건관계자분들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각종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안전보건 기틀이 다져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안전보건관계자분들 중에는 현장에서 안전보건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안전 보건 법정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금번에 안전보건관계자분들의 안전보건 법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업무매뉴얼」을 개발·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전관리자 업무매뉴얼」이 안전관리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충실히 이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목 차 Contents

세1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 1
제2장	안전관리자의 업무15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일반89
제4장	위험성평가 제도121
제5장	안전관리자 관련 질의·회시 137
	부 록 ······· 221



1

안전관리자 선임

★ 관련법령

-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시행령 제12조)

-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그 규모와 업종에 따라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 법 제15조 4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완화되어 있음
-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적용여부 검토 시에는 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3)은 물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겸임이 허용되며,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당해 자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업무를 모두 수행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3개 이내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고용할 수 있다.

④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 제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시행령 제12조 4항)

- ①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불구하고 3인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

(3) 도급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시행령 제12조 3항)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 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에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 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해당 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대상 도급사업

- ⑦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 ①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수급인과 하수금인의 공사금액 포함)
 - ※ 예) 도급인의 근로자수가 20명이고 수급인의 근로자 수는 40명인 경우 해당 사업의 총 근로 자수가 60명이므로 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 면 도급인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②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 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건설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2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1)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시행령 제13조에 9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 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2의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 언·지도
 -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위임사항 없음〉
- (2)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4)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 (1)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안전관리자의 선임 보고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1)서식〉 안전관리자·보건 관리자·사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와 같다.

5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증원·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④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②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 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 보건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표 1-1〉국내 안전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제도

소관부처	근거법령	의무고용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1~2명 [*]
エゥエゥT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 1~2명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 1~3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5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명*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방안전관리자 1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1명*
경찰청	총포·도포·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각 1명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유독물관리자 1명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환경기술인 1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환경기술인 1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	조리사·영양사 각 1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표 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 ·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 · 제2호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제5호·제9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통신업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 · 제5호 ·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3호 · 제25호 · 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
			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한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3〉 안전관리자의 자격(시행령 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 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될 수 있다]
- 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 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 관리자
-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서식 1-1) 안전관리자 등 선임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사업체	소재지					
TIDA	근로자수	_	5 4 () .	-1.4.1	-1)	전화번호
		총	명 (남	명 /여	명)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안전관리자			기관명			기간
(안전관리	경력					
전문기관)			학교			<u></u> 학과
인군기원)	학력		- 목╨			역과
	선임 등 연·월·	일				
	전담·겸임구분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보건관리자	경력		기관명			기간
(보건관리						
						-1-1
전문기관)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	ol				
	전담·겸임구분	<u> </u>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C-1C-
	1 1/2 122		기관명			기간
산업보건의	경력					. =
근由ㅗ근ㅋ						
	학력		학교			학과
		O.I.				
	선임 등 연·월·	<u> </u>				
	전담·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재활용품))

〈서식 1-2〉 안전관리자 등 선임 보고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2)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사업장명					
본사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 * 란은 원=	수급인인 경우에민	· 해당합니다.				
	현장명		발주	자 또는 도급인		
	전화번호		휴대	<u> 전</u> 화		
	소재지					
현장개요	공사기간		공시금액(상시 근로자 수) (명)			
	굴착깊이(M)*		건축물·공작물의 최대높이(M)*			
	건축물의 연면적(m²)*			건축물의 최대층고(M)*		
	PC조립작업 유무*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M)*		
	터널길이(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성명			기관명		
	자격/면허번호	5				
		기관명		기간		
-1-1-1-1-1	경력					
안전관리자		ål¬	\$171			
	학력	학력		학과		
	선임 등 연・월	월·일				
	전담·겸임구분	<u> </u>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2**장 :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아저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위임사항 없음>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이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 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4)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업무별 해설

업무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관련법령

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 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설치·운영방법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의결된 내용은 다음 회의 시 필히 추진현황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 구성, 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① 토사석 광업

- ②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③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 ④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⑤ 1차 금속 제조업
- 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⑦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⑧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 ⑨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① 농업
 - ② 어업
 - ③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④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⑤ 정보서비스업
 - ⑥ 금융 및 보험업
 - ⑦ 임대업;부동산 제외
 - ⑧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⑨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⑩ 사회복지 서비스업
- 3. 건설업
 - ※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4. 1~3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하여 설치·운영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사용자 위원 중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은 제외할 수 있다.

구성

< 근로자 위원 >

- ① 근로자 대표
 -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

	③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 사업장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 위원 지명시 그 수를 제외)
	< 사용자 위원 > ① 사업의 대표자 ※ 같은 사업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②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문기관 위탁시 담당자) ③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전문기관 위탁시 담당자) ④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 선임시) ⑤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사용자 위원으로 지명시 제외한 수의 부서의 장
회의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2.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3.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③ 그 밖의 토의사항 4. 회의결과 주지(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정례조회 등)
심의·의결 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한 사항 ※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마다 개최 건설업에서 노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혐의체로 운영하는 같은 수로 구성 경우 월마다 개최 위원회 소집 공고 회의안건 및 공문 발송 YES NO 의결(과반수 출석, 안건 별 회의 불성립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 의결 (과반수 참석 못함) 중재 요청(안건협의) 중재기관은 고용 노동부 등 회의결과주지 성 실 이 행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3) 노사협의체 설치·운영

☀ 관련법령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 ① 도급사업시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이 노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 ② 노사협의체의 대상, 구성, 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구성	○ 근로자 위원 ① 도급 및 하도급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위촉된 경우)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근로자 대표	
	○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해당사업장 선임시) ③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주 (노사 합의시 20억원미만 사업주 위촉 가능)	
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 마다 협의체 위원장이 소집,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	
협의 사항	○ 협의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②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표 2-1〉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예시)

20 년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20년 월 일 (:~ :)	장 소			회 의 구 분	(정기, 임시)	
	사용자측 위 원			근로	자측 위원		
참	사업주		(인)	근로			(인)
석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위 원		(인)	위	원		(인)
원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심 의 내 용							
의 결 ㆍ 결 정							
기 타							
기록자	직 위 :		성	성명 :	(서)	명)	

나. 안전보건관리규정

☀ 관련법령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 개요

-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게시 또는 비치하고 노·사가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함에 있어 사내 규정이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규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 거 안전보건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업장내 제반 규정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함은 물론 안전보건활동 수행 주체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각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유기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정은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부분적인 수정을 해야 함은 물론, 현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양식에 대해 일괄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하여야 하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지체없이 반영하여 사업장내 규정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아래 절차에 의해 개정하여야 한다.

(표 2-2)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절차

주관 및 절차	주관내용
사업주	안전보건규정의 작성 지시
기초(안) 작성 위원회	초안의 작성과 검토
안전보건위원회	검토,의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규정 작성 완료
사업주 확정 신고	안전보건위원회 검토 의견서 첨부
사업장	게시, 교육, 적용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등

대 상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작성 • 변경	○ 작성(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소방·가스·전기·통신·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 정하는 규정과 통합작성 가능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효력	○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준 수	○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 2-3〉타 안전보건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규정

규정명	근거법	관할부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일반, 가스, 전기, 화재·폭발, 보건·위생 등 전 부문
가스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전기안전관리규정	전기사업법	전기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법	교통
예방규정	소방기본법	화재·폭발 등

〈표 2-4〉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

규칙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6조 제2항 관련)

1. 총칙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3. 안전 보건교육
 -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안전관리
 -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작업장 보건관리
 -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보칙
 -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나.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취업규칙

(1) 취업규칙(就業規則)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이다.

(2) 신고 대상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표 2-5〉취업규칙 주요내용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4)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일반근로자용 표준취업규칙(예시)

취업규칙 내용 중 안전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용노동부 제공자료)

- 제66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각 부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7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68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 제69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회사는 사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7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 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업무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자율안 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관련법령

- 법 제34조(안전인증)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개요

- (1)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의 사용전 안전성 확인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불량 품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여 제조·유통단계에서 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2)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품명, 제조수량,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3년)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 를 제품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붙여야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구조 등으로 인하여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경우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일 수 있다.

(4) 따라서,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표시를 확인하여 적격품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확인방법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s)
- 공단홈페이지 접속〉사업안내/신청 〉인증·검사·심사〉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현황〉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 공단홈페이지 접속〉사업안내/신청 〉인증 검사 심사 〉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인증 〉 안전인증 현황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다. 안전인증 심사종류

구 분		내 용	
	서면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 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안전인증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확인심사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 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호구가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라. 대상 기계·기구

(1) 안전인증 대상(30)

기계·기구 및 설비(11)	방호장치(8)	보호구(12)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절곡기 ④ 크레인 ⑤ 리프트 ⑥ 압력용기 ⑦ 롤러기 ⑧ 사출성형기 ⑨ 고소작업대 ⑩ 곤돌라 ①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①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상두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왕검용 보안면 ⑰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23)

기계·기구 및 설비(11)	방호장치(8)	보호구(4)
형삭기, 밀링만 해당)	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 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 치와 날 접촉 방지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 장치	① 안전모(의무안전 인증 대상제외) ② 보안경(의무안전 인증 대상제외) ③ 보안면(의무안전 인증 대상제외) ④ 잠수기
 ③ 고정용 목재 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터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 인쇄기 ⑪ 기압조정실 	①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 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 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것	

(3) 업무처리 절차

안전인증(법 제34조)			자율안전	확인신	l고(법 제35조)
안전인증신청	제조자(수입자) → 안전인증기관	제품	·시험 및 성능	확인	제조자(수입자) 또는 시험기관
↓ 서면심사	안전인증기관		Û		
1	666046	자	<mark>율안전확인 신</mark>	<u>!</u> 고	제조자 → 신고수리기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기관	X	↓ ├율안전확인신 증명서 발급	고	신고수리기관 → 제조자(수입자)
제품심사	안전인증기관				
Û			구 분		처 리 기 간
인증서 발급(정기적으로 확인심사)	안전인증기관 → 제조자(수입자)		서면심사	_	l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수입자가 신청가능한		안 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_	l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수입하는 경우 및 서면심사와 개별제품 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인 증	제품심사	- 나.	개별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자	울안전확인신고 -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표 2-5〉 안전인증 대상 관리대장

번호	설비관리 번호	설비명	규격	제작회사	인증번호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정일자	확 인	비고

마.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1) 기계기구 및 설비(11종)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2	전단기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 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 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3	절곡기	다.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4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 는 기중기는 제외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5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 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6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프레스・공기압축기 등 기계・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8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용접이음까지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7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롤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8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가. 반응형 사출성형기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9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라. 테일 리프트(tail lift)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0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 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11	7月 塩	원동기로 체인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시켜 벌목, 가지 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 다만, 가지치기전용의 막대형 기계톱(pole saw)은 제외

(2) 방호장치(8종)

번호	방호장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종류	분류	기능
			A-1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1	광전자식	A-2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 개 조를 통해 광선 차단시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
1		양수	B-1 (유·공압 밸브식)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 하지 않으면 기 계가 동작하지 않으며, 한 손이라도 떼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조작식	B-2 (전기 버튼식)	어내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가드식	С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위험부분이 동작되지 않고 기계가 위험 한 상태일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 방호장치

번호	방호장치		ਜ	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손쳐 내기식	D	슬라이드의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상태로 되기 전에 손을 위험 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내는 방호장치
		수인식	E	슬라이드와 작업자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 하강시 작업자 손을 당겨 위험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방 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사,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시 -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딩 하는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나. 설정압	력이 0.1MF	아이는 공보고 사용하는 것 가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보호하는데 당하는 파열 가. 액체의	쓰이는 파 !판은 제외 압력을 개	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한다. 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1.1MPa 미만인 것

번호	방호장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중 절연용에 대하여 적용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용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아.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다만, 별표2제 11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3) 보호구(12종)

=	: -:	
번호	방호장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한다.
2	안전화	가.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나.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3	안전장갑	가.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나.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 흡입 등에의한 근로자의 건 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번호	방호장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7	전동식 호흡보호구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8	보호복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나.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9	안전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 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용접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 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 호하기 위한 보안면	
12	귀마개 또는 귀덮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1) 기계·기구(11종)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 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 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1)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1) 가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 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 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 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불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	기압조절실(Chamber)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 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2) 방호장치(8종)

번호	방호장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 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 변형시키거나 연화시 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5	목재기 공용둥근 톱 반발예방 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번호	방호장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 감지형 안전매트
8	추라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선반지주나. 단관비계용 강관다. 고정형 받침철물라. 달비계용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마. 방호선반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사. 측벽용 브래킷

(3) 보호구(4종)

번호	보호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2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 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번호	보호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4	잠수기	물속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기구로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재래식 헬멧 나. 레저용 다. 후카(hookah)

〈표 2-6〉 작업별 보호구 착용기준

		사용대상작업
	A형	물체의 낙하와 비래의 위험작업
	AB형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추락 위험작업
안전모	AE형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감전 위험작업
	ABE형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감전 위험작업
н огд	차광보안경	용접·용단작업, 용광로작업, 수은등 살균작업, 레이저 취급작업 등
보안경 보안면	일반보안경	연마, 절삭, 분쇄, 화학약품 취급작업, 분진작업 등
	차광보안면	전기용접·용단, 용광로 작업 등
	방진마스크	채광·채석작업, 연삭작업, 연마작업, 방직작업, 용접작업 등 분진 또는 흄 발생작업 등
마스크	방독마스크	유기용제, 황산, 염산 등의 산, 암모니아 그 밖에 화학물질 취급작업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또는 산소농도 모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공기호흡기	고농도의 분진,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작업강도가 크거나 장시간의 작업, 유해물질의 종류나 농도가 불분명한 곳에서의 작업
	귀마개	소음이 85dB 이상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귀덮개	소음이 110dB 이상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710171	안전장갑	전기작업
귀마개, 안전장갑	내진장갑	착암작업 및 진동 발생작업
보호복	고무장갑	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	방열복, 방열두건, 방열장갑	용광로 용융작업 등 고열작업
	신체보호의	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안전화	중량물 취급작업
	정전화	중량물 취급 및 정전기 발생작업
안전화	절연화	중량물 취급 및 저압 전기작업
	절연장화	고압전기작업
	고무제 안전화	중량물 취급 및 물·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아전대	벨트식 안전대	2m 이상의 고소작업, 전주 위의 작업
CC41	그네식 안전대	2m 이상의 고소작업

업무2-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관련법령

- 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세부 내용 등은 본 매뉴얼 '제4장 **위험성평가 제도**' 참조

업무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관련법령

-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개요

-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목적은 재 해를 없애는 것이다. 만일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소한 으로 줄이게 하는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 교육을 효율성 있게 실시하고 또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교육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계획수립 및 방법

- (1) 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 년간 교육 과정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작성
 - 교육과정별 강사를 지정하고 교재를 작성하여 활용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적합하게 선정, 실시

- (2) 안전교육계획수립: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있어서는 법에서 규정된 사항만 교육시키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현장 감독자·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교육대상이 결정되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결정
 - 교육준비(지도안 작성·교재준비·강사)
 - 교육실시
 - 교육의 효과 파악

(3) 교육방법

○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춘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실시 할 수 있다.
- 교육 불참자는 재교육을 통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교육 과정별 내용・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가. 정기교육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기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교육	일용근로자를	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특별교육 디 제외한 근로	H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 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 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건설 일: 교육		로자	4시간
바.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	리책임자	6시간 이상(신규/보수)
책임자 등의 교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신규) 24시간 이상(보수)

POINT

- ⑦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받지 아니하며, 생산·건설현장 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① 교육대상별 매분기 또는 연간내에서 특정 월에 편중하여 교육실시 가능
- ©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 가능 % 작업전 $5분\sim10분$ 정도 실시되는 교육은 미인정
- ②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최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실시
 - ※ "단시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 "간헐적 작업" 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라. 안전보건교육 기록·보존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시여부를 증명토록 하여야 한다.

〈표 2-7〉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규칙별표8의2 제1호 라목 참조)
건설업 기초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표 2-8〉특별교육 대상작업

-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16. 주물 및 단조작업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 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 크리트 작업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34. 맨홀작업
-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37. 로봇작업
- 38. 석면해체·제거작업

마. 교육강사 자격

〈표 2-9〉 사업내 교육,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교육강사 기준

- 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 관련)
 - 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직무교육위탁기관 강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 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 수 이상인 사람
 - 라. 산업안전·보건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이 사람
 - 마. 산업안전 보건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사.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식 2-1〉 안전보건교육 일지(예)

[앞면]

	74	담	당	부서장	대	丑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1. 채용시 교육(8시간이	(상)	 2. 작업 ^լ	 내용 변경	 령시 교육(2시간 이상)				
교육의				4. 정기안전보건 교육(매분기6시간 이상)					
구 분	5. 관리감독자 교육(년1	6시간이상) 6.기티	+ ()교육				
	구 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 육 인 원	교육 대상자수								
	참 석 인 원								
	교육 미실시자수								
교 육 과 목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성 명	직	명	교육실시	시장소 비 고				
및 장소									
특 이 사 항									

[뒷면]

<u>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u>

(20 년 월 일)

연번	소	속	성 명	서명	연번	소	<u>속</u>	성 명	서명
1					25				
2					26				
3					27				
4					28				
5					29				
6					30				
7					31				
8					32				
9					33				
10					34				
11					35				
12					36				
13					37				
14					38				
15					39				
16					40				
17					41				
18					42				
19					43				
20					44				
21					45				
22					46				
23					47				
24					48				

〈서식 2-2〉 교육훈련 계획서(안)

20 년도 교육훈련계획서

과	7					일	<u>ح</u>	년 -	(월)					o		0		ш
- 정 명	구 분	1	2	3	4	E	6	7	8	9	10	11	12	교육 기관	교육 시간	교육 대상자	주관부서	비 고 (변경사항)
병	Ŀ	1	2	3	4	5	6	/	8	9	10		12		16	-110.1		(20.1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업무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가. 개요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개 선하여야 한다.
- 사업장 순회점검은 충분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과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지적건수 및 대책을 분석하여 안전회의 자료나 안전교육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근로자의 복장과 보호구의 사용상태
- 안전수칙의 이행상태와 불안전행동의 유무
-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사용상태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 작업환경의 정리정돈 상태
- 작업허가에 의한 작업상태
- 표준작업의 이행상태
- 작업전후의 근로자 안전점검의 실시상태
- 기타 안전기준의 이행상태

다. 이상발견시 조치

- 순회점검 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 강구
- 중대위험이 발견된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에게 보고
-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행동을 할 경우 안전작업방법을 지도

라. 법규위반 근로자에 대한 조치방법

- O 안전교육을 실시
- 작업시 입회, 또는 작업 전환배치 등 관계부서에 요청
-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

마. 순찰 시 복장

- 보호구 착용 손전등(랜턴) 호루라기(휘슬) 작업금지표지 준비
- 무전기 또는 휴대폰 야광조끼(야간순찰시)

바. 도급업체 안전관리

(1) 공정설비의 개선, 일체정비와 같이 공정 및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업무에 대해 안전관리를 수행 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에서 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할 내용

-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업무 수행실적 및 능력에 관한 자료와 안전작업 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
- 도급업체의 작업시행 이전에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을 도급업체의 작업자들에게 실시
- 도급업체의 작업자들에게 사고 발생시의 비상조치계획 및 도급자가 취해야 할 조치 요령을 숙지
- 도급업체가 수행할 작업에 대해서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규정화하여 도급업체 작업자가 이를 준수토록 함
- 도급업체 작업자의 사고나 재해발생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서식 2-3〉 순회점검일지(예시)

부 서

총 원

무재해

목표

부 문

정 리

정 돈

보호구 착 용

상 태

기계

설비

작업 현장

준비

기 타

금일안전지시

금일사고현황

순회점검일

발생시간

스 등 :				결	담	당						
正외:	점검일제	1				재						
	현 장			20	년		월	일	()		
	출 근			점	검일							
Ā	가 일			금일 달성								
	 점 검	항 목				0	후		불	량	비	고
1. 작업장의 정										_		
2. 공기구의 정	리 정돈은?											
3. 야적장 및 경	창고의 정리	, 정돈 싱	·태는?									
1. 보호구는 착	용하고 있는	- - - 가?										
2. 작업복은 규	'정대로 입고	그 있는가	?									
3. 작업상태는	좋은가?											
1. 기계설비의	청소나 정비	상태는	좋은가'	?								
2.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	낳았는가?	ı									
3. 기계의 회전	부분에 접촉	후의 위험	점은?									
4. 작동상태 및	설비상태는	- 양호한	가?									
5. 표지의 파손	이나 더러운	은 것은 없	없는가?									
1. 작업자가 직	업내용을 숙	유지하고	있는가	?								
2. 작업자의 건	강상태는 ?											
3. 사무실 유무	선연락 체계	∥는 ?										
4. 검전 및 접기	디장비는 구	비되었는	가?									
5. 안내판은 적	정한곳에 거	시 되었	는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 준수하	는가?									
2. 기타 잠재위	험요인은 요	보는가?										
지적 사형				조	치 시	나 항						
1												

장 소

재 해 자

사고현황

조치사항

〈서식 2-4〉 순회점검일지(예시)

	순회점검일지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점검일		점검자	·			(인)
점검지역						

÷1 D	ס וו וגר גד	판	시정:	조치	비
항목	점검내용	정	장소(작업반)	조치사항	고
	1. 운전원, 신호수 자격유무				
크레인	2. 지그사용, 로프걸이 방법				
 작 업	3. 안전장치 작동				
	4. 달기기구 사용적정성				
고소차	5. 자격자 운전유무				
곤도라	6. 작업방법(표준작업)				
	7. 족장, 난간대 설치상태 8. 사다리 설치상태 9. 기타 추락위험장소 유무				
7 4 71 01	8. 사다리 설치상태				
고소작업	9. 기타 추락위험장소 유무				
	10. 안전밸트 착용상태				
전기사용	11. 충전부 노출사용 유무				
	12. 열화, 과부하 개소 유무				
작 업	13. 이동용 전력설비의 접지				
	14. 가스누출개소, 부위				
화기작업	15. 가스니쁠 분리상태				
	16. 도장지역의 화기작업유무				
도장작업	17. 소화기, 소화시설 상태				
	18. 화기지역의 인화물질유무				
	19. 부재적치상태(과다,돌출)				
운반작업	20. 운반차량의 안전수칙준수				
	21. 무리한 인력운반 유무				
정리정돈	22. 안전통로 확보				
	23. 주변정리, 청소청결				
보호구	24. 적정보호구 착용상태				
· 환기	25. 산소 결핍장소				
	26. 환기 불충분장소				
기 타					
특기사항	회사이 이 포 레닌티크 취급 브라				

[※] 점검결과 판전은 O, X, 해당무로 하며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필히 조치사항 기재

〈서식 2-5〉 순회점검일지(예시)

	작 업 장 순 회 점 검 일 지										
				결 재							
		200	년 월	일	() 요일	일 기 :	'				
No	시 간	업체명	지적사항 (장소)		대책 및 담당지	 	조치기한	조치확인			
1											
2											
3											
4											
	특기사항 (행	사, 교육, 외	부 점검 등)								

업무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cdot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cdot 지도

☀ 관련법령

-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개요

- (1) 재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시 재해발생의 원인을 찾아 내어 명확히 규명하고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2)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토록 하여야 하며,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상황을 홍보자료 또는 교재로 작성하여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나. 주요용어

(1) "산업재해"란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 위험 기계·유해 가스 등 물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해, 근로자의 기능이나 지식의 부족·신체조건 등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해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건강상의 장해(직업성 질병 포함)를 포함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만 대상으로 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산업사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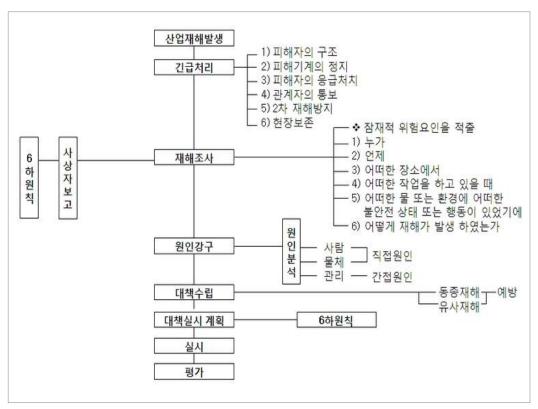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 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3)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4)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재해워인조사 절차



〈그림 2-2〉 재해원인조사 절차

마.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

- (1)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 일시·장소
 -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바. 대책수립 및 실행

재해조사시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 ※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방법
 - 공단홈페이지 접속 > 정보마당 > 산업재해통계 > 국내재해사례를 검색하여 재해원인 및 대책을 참조하여 작성

(1) 교육 실시

- 재해 발생 부서에 대해서는 대책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재해발생 원인이 잠재되어 있는 유사 부서에 대해서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는 부서일지라도 재해증가의 요인이 잠재된 부서에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 사고발생 부서에는 익일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조례에서 집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그 외의 부서에는 사고사례와 함께 방지대책이 집합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안전작업표준의 준수와 규정, 지침의 수정

사고발생부서의 당해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표준을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여 수정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작업표준의 수정, 보완은 당해 부서의 관리자, 감독자가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보완

재해의 원인이 시설에 기인하였거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4) 사례집 발간

재해발생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은폐와 축소는 엄연한 책임의 회피이다. 따라서 실패 사례를 유인물(안전회보, 사례집 등)로 발간하여 동종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료의 보관

- 사고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 검사 측정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측정자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거 나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 재해조사 관련 재료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식 2-6〉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뒷면의 작성 요령	병을 읽고, 위의	각 항목에 적거L	사 해당항목의 '[]'란에 '[√]'표시를 합니다. (제1쪽)					
관리(산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명			지사명					
	업종			근로자 수					
	소재지								
사업체	생산품								
1 🗀 - 11	사업장 구분	[]원·도급 (급 []1차 수급 [])	2차 수급 []그 밖의 사항					
	건설입만	원·도급업체명		공사 종류					
	기재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재해발생	발생일시			재해 발생 지역(부서)					
개요									
재해발생	인적 피해	사망 ()명, 부상()명	물적 피해 천원					
피해	조업정지일								
	재해원인물	체·물질							
	재해 유발	공정 및 내용							
재해									
발생과정 및 원인	및	재해발생과정 ** 재해 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원인의 기록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재발 방지계획

		(제2쪽)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	 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직위) 성별 []남 []여
재해자	입사일	년 월 일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가족 []파견직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그 밖의 사항()
	발생시점	[]정규작업 []식사·휴식 []작업 전 []출퇴근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그 밖의 사항()
	수행작업공정	
	·내용	재해 당시
산업재해	발생형태	가해물 상해 종류(질병명) 상해 부위(질병 부위)
내용	작업형태	[]단독 방호설비 []대상 개인보호 []대상
		[]복수 []비대상 장비 []비대상
		(명) (설비:) (설비:)
	근로손실	[]사망 []부상 []재해 당일 계속 작업 []재해 당일 작업 불가
		출근하지 못한 일수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사업주 (서명 또는 이)
		(18 == 2)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제3쪽)

작성방법

- 1. 근로자 수: 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가족근로자, 훈련생 등 급여를 받은 전년도 모든 근로자 수의 월평균을 적습니다.
- 2. 원·도급 업체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수급업체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3. 공사 종류, 공정률: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다리, 터널, 지하철·전철, 도로, 석유화학플랜트, 댐·제방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 4. 재해 발생지역(부서): 재해가 최초로 발생된 지역·장소(부서)를 적습니다.
 - ※ 근접 작업장의 사고로 인한 경우 재해자의 작업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 발생 근접 작업장을 적습니다.
- 5.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조업정지: 하나의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해당 시업장의 현황을 적습니다.(동시에 피해가 발생된 다른 시업장 현황은 제외)
- 6. 방호설비, 개인보호장비: 재해 및 작업과 관련되어 그 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표시하고 "대상"인 경우는 해당 설비·장비를 적습니다.
- 7. 작업 형태: 2명이 1조인 작업의 경우에도 재해자의 작업장소가 단독 작업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2명이 1조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할 때 1명은 1층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1명은 5층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 8. 재해원인 물체·물질: 재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설비, 시설, 물질 등을 말합니다.
 - [예: 프레스, 크레인, 벨트컨베이어, 분쇄기, 롤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산화에틸렌, 신나, 사람, 개 등]
- 9. 발생 형태: 재해가 발생한 형태 또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재해원인 물체・물질과 관련된 현상을 말합니다. [예: 추락, 낙하·비래, 협착, 전도·전복, 충돌·접촉, 이상온도에의 노출, 유해·위험물질에의 노출, 회재·폭발, 감전 등]
- 10. 재해 유발공정 및 내용
 - 가. 작업공정: 재해 발생에 근본적 원인이 된 작업공정(재해자 작업공정이 아닌 동료 작업공정일 수 있음)을 적습니다.
 - [예: 용해공정, 용접공정, 성형공정, 절단공정, 운반공정, 반응공정, 기계·건 축물의 설치·보수공정 등]
 - 나. 작업내용: 재해가 발생한 작업공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작업 수행 내용 또는 행위를 적습니다. [예: 재료 가공물의 투입·취출, 조립·연결·해체, 기계·차량 등 운전·조작, 상역·하역, 적재, 휴식, 단순이동중 등]
- 11.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 언 근무기간)
- 12. 고용 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시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계절제 등 단기계약직)
 - 다. 일용: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 라. 시간제: 일당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
 - 마. 가족: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바. 파견직: 파견근로에 관한 법의 파견사업주를 통해 고용되나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 사. 자영업자: 혼자 혹은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 아.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파견근로자 등
- 13. 근무 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재해 당시 근무상황이 아님)
 - 가. 정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2교대, 3교대: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로 순환되는 형태를 말합니다.(1개월 이상을 주기로 근무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14. 근로 손실: 재해 당일을 포함하고 작업장에 복귀 또는 작업 제한을 받은 전날까지 산정하여 적고, 만약, 조사 당일까지 복귀되지 않았 거나 작업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복귀 예정일 등을 추정하여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 ※ 근로 손실의 개념은 사업장의 작업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자의 근로능력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 출근 하지 못한 일수: 결근 등 작업 불능일수를 말합니다.(재해 후 작업 개시 전까지 작업이 불가능했던 일수, 공휴 일 포함 산정)
 - 나.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통원치료 또는 요양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수. 즉, 작업 제한은 업무량 감소, 작업시간 단축, 작업 전환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 15. 직업(직위): 재해 당시 수행하던 업무 등을 적지 말고 평소에 수행하는 정규직업(직종)과 직위를 적습니다.
 - 가. 직업(직종): 사무원, 전기공, 배관공, 벽돌공, 미장공, 단열공, 철근·콘크리트공, 목공, 용접공, 기계설비·조립공, 조경원, 지게차운 전기사, 건물관리원, 청소 관련 단순노무자, 무용가, 요리사 등
 - 나. 직위: 사원, 주임, 반장, 대리, 직장, 과장, 차장 등
- 16. 상해 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17. 상해 부위(질병 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 종류 및 상해 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18. 가해물: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물체 또는 물질을 말합니다.(재해원인 물체·물질 "예" 참조)
- 19. 평상시 수행 작업공정·내용: 재해자가 평소에 맡고 있거나 수행하던 업무 및 작업공정을 적습니다.
 - ※ 운전, 공사 등 이동을 수반하는 업무나 변경이 잦은 불특정한 장소에서의 업무라도 그 업무 형태가 정규적인 경우 평소 업무로 규정 합니다.
- 20. 재해 당시 수행 작업공정·내용: 재해 당시 재해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던 업무 또는 상태를 적습니다.
 - ※ 동료 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해유발 작업공정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식 2-7〉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0	-11, 11,	~	20 -		`1				
문서 수	_	호 : <u>!</u> : 00지방고	용노	⊏동(지)	청장(1	산:	재예방지5	E과징	-)				
발	신	:					(전화번	호 :)
1. ላ	나업 ⁻	장 개요											
	원 청		대		소					근로		업	
장	하 청		표 자		- 재 지					자 수		종	
2. 🌣	내 해	자 인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	경력		재해	정도	Ē
										□사망			명) 명)
										□부성 (치료0	r(예상기긴		명) 월)
3. 🌣	비해	발생 내용 및	조기	치현황									
일			장					발생			기인물		
시			소					형태			1162		
4 A	LT:	격위											

〈서식 2-8〉 재해 재발방지계획(예시)

재해 재발 방지계획(예시)

ᄆᄮ	l업:	장 :	개요
----	-----	-----	----

사업장명	재해일시	재 해 자	
재해발생개요			

」 새해말생 원인 문석	및 새말망시 니	세 잭	
재해발생 원인			
재발방지 대책			
가. 단기적 대책			
나. 장기적대책			
1. 0-1111			

- ※ 주) 1. 재해발생개요는 재해발생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2. 재해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은 상호대응이 되도록 작성
 - 3. 재발방지 대책은 사업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선기 간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

〈서식 2-9〉 사고보고서 양식(예시)

	사 고	보고 서	
발생일자		발생시간	
발생장소		목 격 자	
사고개요			
사고원인			
조치내용			
개 선 점			
향후계획			

〈서식 2-10〉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 공	봉통란은 모누 기	기재하시고, 해당 신	·· 	하시기 바랍니다.	(앞 면)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성 명(외국인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재	주 소 :			휴대전호 전화번호	
해	재해발생 일 시	년	월 일	시문	년(E-mail)
	채용일자:	년 월	일 국 적:	직 종:	
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작업개시	· · -
		사상 지위 :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와의 □실제사업 ² 관계: □형제자매		□동업자 □배우자	□부모 □자녀 □해당없음
	t				
		신청구분	□최초요양 □재요양		진 폐
	사업장	※ 최:	조요양 및 새요양 신성시 유업급(여(뒷면)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u>t</u>
	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생상황 (별지사용 가	느		
			<u> </u>		
	① 위 재해와	과려하여 음주 또	= 음주운전으로 과공서에	신고(접수)한 사실이 있습니	까? □ 예 □ 아니오
r 1				신고(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요	※ 재해경위 등 주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		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양	※ 작성방식: 어디어 떤 이유 때문에	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	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 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	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
	목격자가 있는),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기	,
	가해자가 있는),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기	()
			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의료기관명	3:	· 소재지:	□조사이라고 이런 ㅇ아	
	재요양을	사유	□금속내 고정물 제거 □즉산안하로 이하 수술전 :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 가료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	
	받는사유	수술할 경우 기재	수술부위:	수술예정일자:	<u> </u>
요양급	라여 신청 및 휴업		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청구)	 합니다.
۲[Ol ۲	łod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정 소 재			Δ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험기	나입자(사업주)		(인)	대 리 인	(인)
※ 보	험가입자(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서명 또는 날인을 법 시행규칙 , 제20조	받을 수 없으면 확인을 생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시	략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 합주)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및 다른 보상(배상) 등의 내역은 뒷면에 작성합니다.]

______ 75 **__**

(뒷 면)

- ※ 요양급여 신청 구비서류 ※
- 1. 초진소견서(최초요양 또는 재요양) 1부.
- 2. 목격자 및 행정기관(경찰서) 등에서의 관련 진술서 사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관련 서류 1부.
- 3. 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및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의 내역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휴업급여 청구기간		~ .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재해자 확인사항>			
	①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	시업주로부터 급여를 받	l 있습니까? 1. 예() 2	2. 아니오()
	②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취업함() 2.	취업하지 못함 ()
	③휴업급여 자동지급을 신청하겠습니	까?	1. 예() 2.	아니오()
	※ 작성할 때 유의사항 ※			
	1	- 티크 티어스크이 뒤에	I ##미 시니카 되어서 오어지나!	할어 드 베이스크이 보기 드의 교회
휴	1. 「취업」 이란 재해 당시 사업 또는 하는 개념입니다.	나는 사업으로의 취임	문만 아니라 사영합 운영이나	약입 등 생입으도의 목귀 등을 포함
π	1:	저시서에 스요되 기가	체이 체르 기가 드 ㅇ야ㅇㄹ 이침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기대하
업	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에서 세비 기단 6 표6—포 단역	기어 위답이자 옷한 기년으로 기대이
-	I i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	d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
급	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			11 12 22 31 12 1122 1
	4.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휴업급	여 상당하는 금액을 미	의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휴업i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	※ 보험가입자(사업주)는 휴업급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재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 시	·실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대장, 계좌
			부를 대체청구 할 수 있습니다 .	
	5. 「휴업급여 자동지급」 이란 1회의			
	6. 휴업급여 청구서의 처리기한내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자의 생겨	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위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일용근로	·자는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석용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 구비서류 ※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이	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단,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간의 임금대장)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계약	서 또는 일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	타 번령에 따라 보상 9	E는 배상금을 수령한 시실이 있습	당니까? 1.예() 2.아니오()
다 른 보 상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	Ⅱ 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믑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u>고</u> 산				1. 합의서 2. 판결문(또는 결정문)
				3. 영수증 4. 기타
본인은	휴업급여 청구 및 다른 보상 등의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	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청구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근로	복지공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금품·힝	응을 요구하면 청렴상[당 부조리신고센터(02-2670-0044	1)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새>	변합급여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수시번 포상금을 느립니다. =========
	향후 치유(치료종결) 후 동 사업장에서			□ 예 □ 아니오
		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자	보험 관련 안내와 고객만족도 및	! 청렴도 조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
-	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공	본인은 '산업새해모상모엄멉」에 따다 인의 주민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개'	가 근로목시공단이 산새 기저ഥ로 제2되/이타바	모엄 관련 안내와 SMS서비스, 」 5)에게 제고되고 조칭처터 미 조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를 위하여 본 청경과로 소자이용하에 도이하니다
	인의 구인민호, 성명, 신화민호 등 개 [.] 	인성포를 세이지(취락될	5)에게 제공야고 오외앙고 및 조	외실파글 구입'이용함에 공의합니다.
통	₹ 00	급여 시청 및 효언근	여 청구 대행에 대한 위임(동	
3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	여 청구를 아래 산지	H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	-1/8/
	(total.kcomwel.or.kr) 제출 포함]에 제	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위임하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인)
	<u>. </u>		근로복지공	당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m²)

업무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가. 재해통계 목적

- (1) 재해통계는 재해의 발생 상황을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 (2)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재해의 발생정도를 알아내어 그 집단의 복지수준 또는 위험 정도를 판가름하는데 이용한다. 이러한 목적의 통계는 재해의 건수, 빈도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자의 보상·재활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 (3) 이러한 목적의 통계는 재해의 강도, 재해부위, 치료기간, 재활기간, 치료비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재해통계를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발생된 재해의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종의 재해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통계는 재해의 기인물, 발생형태, 사고상황 등 여러 가지의 사고 원인에 초점을 두고 생산하게 된다.
- (4) 또한 재해통계는 재해 예방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사업목적 달 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재해통계의 목적 및 역할

- 재해원인을 분석, 위험한 작업 및 여건을 도출·추정
-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재해 예방정책 방향을 유도
- 재해실태를 파악하여 예방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지표 제공
- 재해 예방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측정수단

나. 재해통계 작성 및 산출

(1) 재해통계 작성 단계별 핵심사항

재해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재해원인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재해조사표가 준비되어야 하고, 이 조사표를 잘 이해하고 사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사원이 있어야 하며, 조사내용을 일관성 있게 분류·분석하여 전산 입력하고, 사용이 편리하게 통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해통계생산, 분석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0〉 재해통계 작성단계별 핵심사항

단계	내용	핵심사항
1. 조사표	• 통계분석 및 작성이 용이하며 사고의 특성 을 잘 나타낼 수 있도 록 분류된 양식 준비	• 양식의 충실도 : 재해분석의 관점에서만 보면 기록양식은 자세할수록 이상적이나 통계분석의 목적, 조사자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하여야 함
2. 조사 및 기록	사건 발생시 여러 가지 증거 및 정황을 근거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및 기록	 조사의 신속성: 사고 발생 초기에 조사하여야 사고의 조사 내용이 정확, 충실할 수 있음. 조사자의 전문성: 조사자는 사고원인 및 과정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조사표상의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 조사자의 공정성(객관성)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 을 분류·분석 ● 가공된 자료의 의미 분석 ● 주요 사고 원인의 제시 	하고 입력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함. • 분석자의 전문성 : 분석자는 가공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조사표 항목
4. 예방정책 수립·시행	주요 사고 예방의 정책 방향 설정구체적 예방 방법 제시	●정책의 효율성, 실현성

(2) 재해통계 작성요령

- 재해예방에 활용가능한 통계의 작성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분석하되 각 항목에 대한 개별 또는 상호교차 분석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인적 구성별 특성 분석
 - 사업장의 조직단위별 특성 분석
 - 재해발생원인별 특성분석
 - 연도별, 월별, 요일별 등 시간별 특성분석
 - 기타 손실비용(인적, 물적)등의 특성 분석

〈표 2-11〉 재해통계의 종류

구분	세부내용
1.인적 구성별 특성	1.1 성별 근로자수, 재해자수, 비율 1.2 연령별 근로자수, 재해자수, 비율 1.3 직위·학력·직종별 근로자수, 재해자수, 비율 1.4 동종업무 근속기간별 근로자수, 재해자수, 비율 1.5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재해자수, 비율 1.6 근무·작업형태별 근로자수, 재해자수, 비율
2.조직 단위별 특성	2.1 부서별 근로자수, 재해자수(건수), 비율 2.2 작업공정별 근로자수, 재해자수(건수), 비율 2.3 작업내용별 근로자수, 재해자수(건수), 비율
3. 재해발생 원인별 특성	3.1 재해발생형태별 재해자수(건수), 비율 3.2 재해유발물체·물질·환경별(기인물),재해자수(건수), 비율 3.3 상해종류별 재해자수, 비율 3.4 상해부위별 재해자수, 비율
4. 시간별 특성	4.1 연도별 근로자수, 재해자수(건수), 비율 4.2 월별 근로자수, 재해자수(건수), 비율 4.3 요일별 근로자수, 재해자수(건수), 비율 4.4 시간별 근로자수, 재해자수(건수), 비율
5. 기타손실비용 등 특성	5.1 인적피해별 재해건수, 비율 5.2 설비피해별 재해건수, 비율 5.3 생산조업정지별 재해건수, 비율 5.4 재해발생시점별(휴일, 휴식, 연장근무 등)재해건수, 비율 5.5 개인보호장비 및 방호장치 관련 통계 등

- 재해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은 용이하게 이해되며 활용하기 쉬울 것
- 재해통계는 도형이나 숫자에 의한 표시법이 있지만, 도형에 의한 표현이 이해하기 쉽다. 수치에 의해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 집단에 관해서 그것이 많은가 적은 가의 판정이 어려우므로 이것을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해가 발생된 대상 모집단의 근로자 수나 연 근로시간 수 또는 근로일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재해 발생율로 표현하는 방법을 취한다.

다. 재해 통계지표의 산출방법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재해발생 정도를 알아야 한다. 사업장에 잠재된 위험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되어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재해의 발생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재해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향으로 발생하고 있는가를 확률적으로 통계화 시킴으로써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 발생율은 단위 없는 숫자로 표시하여 재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과 재해발생 손실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 재해율

그로자 1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의미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재해율 = 재해자 수 / 평균 근로자 수 x 100

- ※ 재해자 = 사망자 + 부상자 + 업무상질병 이환자
- 예) 연평균 100인이 근무하는 어느 공장에서 1년에 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재해율은 얼마인가? [풀이]재해율 = 5 / 100 x 100 = 5

(2) 천인율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낸다.

연천인율= 재해자 수 / 평균 재해자 수 x 1.000

(3)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평균 근로자 수 x 10,000 ※ 사망자 수 = 사고사망자 +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

(4) 질병이환(천인)율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업무상질병 이환판정을 받은 자 수를 나타낸다.

이환(천인)율 = 업무상질병 이환자 수 / 평균 근로자 수 x 1,000 ※ 업무상질병 이환자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포함하지 않음

(5) 도수율(빈도율)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낸다.

도수율 = 재해 발생건 수 / 연 근로시간 수 x 1,000,000

여기에서 연 근로시간을 실제가동일수로 산정한다. 단일 근무일 경우 심야근무시간 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이 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집계기간은 같으며 그 기간은 임의로 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 1개월, 반년, 1년 등의 기간으로 계산하기도 한다(1일 8시간, 월25일, 1년 30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1년을 2,400시간으로 계산한다.)

예)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에서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도수율은 얼마인가? (1일 8시간, 월 25일로 계산한다,)

[풀이]연 근로시간 수 = 500명 x 25일 x 8시간 x 12월 = 1,200,000 시간 도수율 = 5 / 1,200,000 x 1,000,000 = 4.7

(6) 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

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는 그 계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환산하기가 어려우나 재해발생률을 서로 비교하려 할 경우 다음 식이 성립된다.

연천인율 = 도수율 x 2.4 도수율 = 연천인율 / 2.4

(7) 강도율

산업재해의 경중 정도를 알기 위해 많이 이용되며,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일수를 말한다.

강도율 = 근로 손실일 수 / 연 근로시간 수 x 1,000

- ①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신체 장해등급 1~3급)은 7.500일
- ② 영구·일부 노동 불능은 〈표 3-3〉과 같다.
- ③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300/365을 곱한다.
- ④ ①,②의 경우 휴업일수는 손실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표 2-21〉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 손실일수

신체장해등급	4	5	6	7	8	9	10	11	12	13	14
손실일수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예) 1년간 연 근로시간이 120,000시간인 어느 공장에서 3건의 휴업재해가 발생하여 220일의 휴업 일수를 초래했다. 강도율은 얼마인가?

[풀이] 근로 손실일 수 =220일 x 300/365일 = 181일 강도율 = 181 / 120,000 x 1,000 = 1.5

라. 재해 손실비용의 산출

- (1) 재해손실비용은 재해로 인하여 경영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며, 재해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예방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는 직접 손실비용과 간접 손실비용이 있고 일반적으로 간접 손실비용은 직접 손실비용의 4배에 상당한다는 하인리히의 방식(직접비용:간접비용 = 1:4) 방식에 의해 계상된다.

- (3) 경제적 손실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상을 입은 본인의 요양, 휴업, 장해 등의 보상비 또는 사망한 경우의 유족 보상비 나 장례비의 지불
 - 부상 또는 사망한 사람 대신 새로운 작업자를 채용하여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
 - 부상당한 사람의 구급, 이송이나 사고 현장의 뒤처리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다른 작업자가 일단 작업을 중단하는 것에 의한 조업정지 및 이에 대한 임금의 지불
 - 재해에 의한 건물, 구조물, 기계, 설비, 기구 등의 파손이나 원재료의 손실
 - 재해에 의한 근로의욕 침체와 생산성 저하에 의한 손실
 - 재해에 의해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제품을 납기에 맞추지 못하거 나, 공기가 늦어져 거래 선의 신용을 잃는 것 등에 의한 손실

재해통계 활용 유의점

- 재해통계를 근거로 해서 대상조직의 상태나 조건을 추측하지 말 것, 어디까지 그 통계의 사실을 정직하게 읽고 판단할 것
- 재해통계 자체를 중요시하지 말고 통계에서 나타난 경향과 특성의 활용을 중요시 할 것

업무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관련법령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 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신업안전보건위원회)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개요

- (1)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2) 근로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구착용, 출입금지 등이 있으며,「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 (3)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자체 관리 요령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위 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나. 위반 근로자 관리요령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공지토록 한다.

- (2) 수시로 위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1차 구두로 조치건의를 하였으나 미이행시 "시정 통보서"를 발부한다.
-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조치 건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4) 안전관리자는 "시정통보서"를 발부하였음에도 미이행시 자체 "양정기준"을 제정하여 인사조치 등을 의뢰토록 한다.
- (5) 위반 항목중 점유율이 높은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지속 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서식 2-11〉 위반자 시정통보서

안전:제호

시 정 통 보 서

소속: 부서: 직위: 성명:

- 귀하의 신체와 건강은 단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입니다.
- 지금 귀하는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위협에 노출시켜 놓고 있습니다.
- 사고는 순간이며, 재해는 귀하와 가정의 고통이기 때문에
- 귀하와 가정의 행복, 그리고 회사의 번영을 위하여
- 아래와 같이 시정통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① 일 시 :
- ② 장 소:
- ③ 내용 및 대책 :

20 . . .

○ ○ ○ 부 안전관리자 (서명)

본 시정통보서의 미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 및 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바라며, 본 통보서는 부서장이 시정확인하고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바랍니다.

직무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관련법령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개요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등 법상 산업안전관련 서류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각종 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나. 기록·유지 대상

(1) 법상 기록대상 및 서류보존 기간

보존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3년	모든재해 산업재해 발생서류		① 산업재해 기록서류(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의 원인 및 과정, 재해발생 방지계획 포함)	법 제10조 제1항	
	3 371	3일이상 휴업재해	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5년	작업환경즉성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 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 발암성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법 제42조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법 제43조	

(2) 기타 안전관련 서류

구분	보존서류
업종공통	① 최근 재해발생현황 ② 산재요양신청서 및 재발방지대책 ③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및 안전보건관리조직도 ④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서류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일지(노사협의회 회의록) ⑥ 안전보건관리규정 ⑦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서류 ⑧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⑨ 안전보건진단 서류(해당시) ⑩ 공정안전보고서(해당시) ⑪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해당시)
건설업종	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② 사업주간 협의체 관련서류 ③ 합동 순회점검 일지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보고서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서류
재해조사시	① 중대재해발생 보고서 ②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③ 근로계약서 ④ 임금지급대장 ⑤ 작업계획서 ⑥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허가증 ⑦ 해당 작업관련 보호구 지급대장 ⑧ 해당 작업관련 안전교육 관련서류 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⑩ 법인등기부등록(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①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일지 ① 합동순회점검 일지 ③ 합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으로서 1개 법률, 1개 시행령, 3개 시행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대칙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다양성

-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 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 잡성 등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
 - 이렇게 복잡·다양해지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 건법은 복잡·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음

(2) 기술성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소 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
 - 따라서 법령에도 전문기술적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령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기술적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음

(3) 강행성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등 강행 성을 띠고 있음

(4) 사업주 규제성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요지

(1)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 의무사항 】

- 1.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등을 준수
- 2. 산업재해발생 보고의 의무
- 3.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
- 4.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 5.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

■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 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 의무사항 】

- 1.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 2.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3.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의무

(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해야 할 사항

-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 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 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 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
 -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 1.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긴급병원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 보존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2.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4일이상 요양)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보고사항 : ①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조치 및 전망, ③그밖의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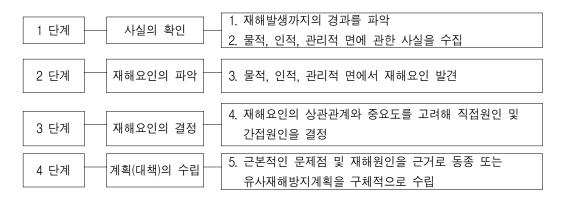
3.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3)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계획 수립

-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



■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교육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 교육	생산직근로자 사무직근로자 관리감독자	매분기 6시간이상 매분기 3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8시간이상 1시간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작업 내용 변경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시간이상 1시간이상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6시간이상 2시간이상	① 공통교육 ② 개별내용(유해위험 38개작업별개별교육) 등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① 공통교육(산안법 주요내용, 안전의식재고 등) ② 교육대상별(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등

※ 관리감독자란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생산직근로자란 :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일용직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

되지 않는 자

(5) 유해·위험한 장소 안전보건표지 부착

○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 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분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차량통행금지	제반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금지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표지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기금지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하는 장소
	물체 이동금지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저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장소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 압축 및 강산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
	급성독성물질 경고	독극물이 있는 장소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압이 흐르는 장소
경고 표지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위에 크레인 등과 같은 달려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표시	낙하물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염려가 있는 장소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몸균형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물질이 있는 장소
	위험장소 경고	기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당해 물체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지시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표지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112.1	귀마개 착용	소음으로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복 착용	방열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녹십자 표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들 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안내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표지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구	비상출입구
	좌측 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우측 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출입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금지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석면제조, 사용, 해체·제거 사업장
표시	10 110 0 -9119 911	12 1-, 10, 11 11 110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표지의 설치기준

-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함
-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여야 함
-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음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1)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하여야 함
- (2) 임의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아니됨
- (3)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4) 부착된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
- (5)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 실시
- (6)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유무 등을 점검
- (7)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 설 치하여야 함

(6)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 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8) 선창작업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각종 보호구 사진 예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프레스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신체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조치사항

○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자 준수사항

○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 조 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 회복 하여야 함

■ 위험기계·기구별 방호조치

기계・기구명	방호조치	사 진	기계・기구명	방호장치	사 진
프레스·전단기	광전자식안전장치등방호장치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아세틸렌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Total	롤러기	급정지장치	Janes (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 계·기구	방폭용 전기 기계·기구		연삭기	덮개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 기	100000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ALL THE REAL PROPERTY.
크레인·승강기·곤돌 라·리프트	과부하방지장 치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 접촉예방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1111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011111
		u · u u	정전 및 활선작업 용 절연용기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The state of the s

(8)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적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검사 처리절차

○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내 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 ②한국위험 기계검사협회 ③대한산업안전협회 ④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중에서 선택하여 안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 주기



■ 안전검사 합격표시

○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합격필증을 근로자들이 식별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안전검사 합격표시 〉

안 전 검 사 합 격 중 명 서				
① 유해·위험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④ 합 격 번 호				
⑤ 검사유효기간				
(A) 1 1 1 1 1 (A) 1 1 1 1 1 1 (A)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0 0 0 0	(직인)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검 사 원: ㅇ ㅇ ㅇ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생략		

■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연번	검사대상	사진 예시	검사대상 범위
1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것(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 크레인 제외
2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gf/cm²)을 초과한 경우 - 용기의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 사용 온도 60°C이하의 물 취급탱크, 프레스 및 공기압축기 등 기계기구와 일체형,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 등은 제외
3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해머, 목재 압착프레스,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 정용 프레스 제외
4	전단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원형회전날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전용 전단기 제외
5	사출 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 되는 사출성형기에 적용 - 형체결력 294kN 미만, 장화제조용, 반응형, 압축 및 이송형, 클램핑장치 인력작동은 제외
6	원심기		○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 회전운동에너지 750J 이하, 최고 원주속도 300㎡s 초과, 화학설비 해당은 제외
7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73조 "특수화학설비"로서 위험물질을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제외
8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 간당 5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수분 및 용제건조, 도료 및 코팅피막 개선 으로 가연성 가스발생, 가연성 분말 건조설비로 분진발생 설비에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제외
9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 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 작업자가 접근 할 수 없는 밀폐형구조 제외
10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 - 엔진구동 방식, 지면에서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11	국소 배기장치		○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하여 적용 -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미만인 경우 제외
12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 거리가 3m 이하 일반작업용 리프트 제외

(9) 안전인증제품 구입 사용

○ 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2,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안전인증 대상기계 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11)	방호장치(8)	보호구(12)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절곡기 ④ 크레인 ⑤ 압력용기 ⑦ 롤러기 ⑧ 사출성형기 ⑨ 고소작업대 ⑩ 곤돌라 ⑪ 기계톱(이동식만해당)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 및 비신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왕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11)	방호장치(8)	보호구(4)
① 연삭기 및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 기, 밀링만 해당) ⑨ 고정용 목재 가공용기계(둥근톱, 대 패, 루터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⑪ 인쇄기 ⑪ 인쇄기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방지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 장치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	① 안전모(의 무안전인증 대상 제외) ② 보안경(의 무안전인증 대상 제외) ③ 보안면(의 무안전인증 대상 제외) ④ 잠수기

(10)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자 건강진단

① 종류 및 실시대상

종 류	일반건강 진단	특수건강 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 진단	*임시 건강진단
대 상	전체 근로자		진단 대상업무 나 근로자	건강장해 호소자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지방관서 명령 근로자

- * 임시건강진단: 동일 근무자와 유사한 질병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건강진단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

■ 건강진단 절차



■ 건강진단종류별 진단 방법

- ① 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②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 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함
-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176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 로자. 직업병유소견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말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 1.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화학물질 108종
- 2. 구리, 납, 수은 등 금속 19종
- 3.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4.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물질 14종

5. 허가대상물질 13종

6.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6종

- 7.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별표12의 2 참조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상이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특수건강진단기 관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유해인자 주기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 이내	6월
2	벤젠	2월 이내	6월
3	1,1,2,2-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3월 이내	6월
4	석면·면분진	12월 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월 이내	24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2의2 모든 대상 유해인자	6월 이내	12월

③ 배치전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 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천식,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보이 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11)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주기적 실시

○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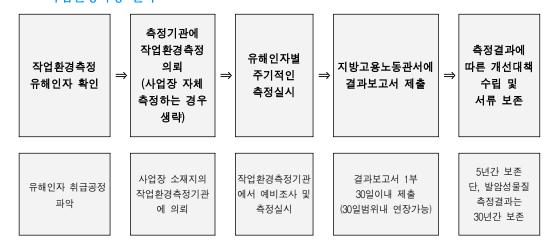
■ 작업환경측정 대상

- 근로자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다만, 임시작업(매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은 제외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 1. 메틸 알코올. 아세톤. 니트로벤젠 등 유기화합물(113종)
- 3.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17종)
- 5. 허가대상물질(14종)
- 7.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6종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 별표11의 4 참조
- 2. 구리, 니켈, 수은 등 금속류(23종)
- 4.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물질(15종)
- 6. 소음 등 물리적 인자(2종)
- 8. 야간작업(2종)

■ 작업환경측정 절차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주기

측정주기	대 상
70171	۹۱ ٥
30일이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 작업장
6월 1회	정기적 측정주기
3월 1회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년 1회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제외)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공정이 있는 경우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12) 화학물질 사용·취급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공정에 물질안전보건자 료를 비치하고 경고표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 보자료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할 수 있음

■ MSDS작성시 포함 내용

①화학물질의 명칭·구성성분 ②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③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물리·화학적 특성 ⑤독성에 관한 정보 ⑥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⑦응급조치 요령 ⑧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MSDS관련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 요 내 용
MSDS의 작성 및 제공	제조· 수입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 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영업비밀 해당물질 제외),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MSDS의 비치	사업주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화학물질 취급공정)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함
경고	제조· 수입자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표시	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를 하여야함.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근로자 교육	사업주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 이해방법

■ 경고표시(예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무료회원 가입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바로가기 〉 GHS MSDS 검색에서 "벤젠"을 검색하여 ① 경고표시 출력 ② 저장을 누르시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출력 가능



(1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제조업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1.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업종(13개 업종)으로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
-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이상 규모의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 심사 및 확인 절차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 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②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1차 금속 제조업 ⑩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제조업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 용량이 3톤 이상일 것
 -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에 한정한다)이 안전보건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일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한다.

3)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을 말한다)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일 것
- 5)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 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 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건설업 〉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m²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공사구분

- 1종 공사
-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
-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 2종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심사



○ 확인



(14) 화재·폭발, 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 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PSM: Process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 7개 업종* 은 전 보유설비, 그 외 업종은 21개 유해·위험 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공정을 설치, 이전 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① 생산량의 증가 또는 원료/제품의 변경을 위해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하는 경우, ②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창고, 조명 등 제외) 경우, ③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 7개 표준산업분류표 업종 : ① 원유정제 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④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⑤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⑥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⑦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51개 화학물질 및 규정수량<개정 2014.3.12.>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제1항 관련) <개정 2012.1.26, 2014.3.12.>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제조·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제조·취급·저장: 150
4	포스겐	제조·취급·저장: 750
5		제조·취급·저장: 20,000
6	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 200,000
7	급 · 염소	제조·취급·저장: 20,000
8	그 이산화황	제조·취급·저장: 250,000
9	사산화황	제조·취급·저장: 75,000
10	이황화탄소	제조·취급·저장: 5,000
11	시안화수소	제조·취급·저장: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제조·취급·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제조·취급·저장: 20,000
14	황화수소	제조·취급·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제조·취급·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제조·취급·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제조·취급·저장: 50,000
18	수소	제조·취급·저장: 50,000
19	산화에틸렌	제조·취급·저장: 10,000
20	포스핀	제조·취급·저장: 50
21	실란(Silane)	제조·취급·저장: 50
<u>22</u>	<u>질산(중량 94.5% 이상)</u>	<u>제조·취급·저장: 250</u>
<u>23</u>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u>제조·취급·저장: 500,000</u>
<u>24</u>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제조·취급·저장: 3,500
<u>25</u>	<u>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u>	제조·취급·저장: 100,000
<u>26</u>	<u>클로로술폰산</u>	제조·취급·저장: 5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취급·저장: 2,500
28	<u>삼염화인</u>	제조·취급·저장: 750,000
<u>29</u>	염화 벤질	제조·취급·저장: 750,000
30	이산화염소	제조·취급·저장: 500
31	<u>염화 티오닐</u> ㅂ르	제조·취급·저장: 150
32	<u>브롬</u> 일산화질소	제조·취급·저장: 100,000
33 34	일산화실소 붕소 트리염화물	<u>제조·취급·저장: 1,000</u> 제조·취급·저장: 1,500
35	<u>중도 드디딤와물</u>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취급·시청· 1,500 제조·취급·저장: 2,500
36 36	<u>메르에르게단되단되르</u> 삼불화 붕소	제조·취급·저장: 2,500 제조·취급·저장: 150
37	<u> </u>	제조·취급·시장· 130 제조·취급·저장: 2,500
38	<u> </u>	제조·취급·저장: 2,500 제조·취급·저장: 500
39	<u> </u>	제조·취급·저장: 20,000
==	<u></u>	10. 20,000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과산화벤조일 과염소산 암모늄 디클로로실란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불산(중량 1% 이상) 염산(중량 10% 이상) 황산(중량 10% 이상)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 50 제조·취급·저장: 2,500 제조·취급·저장: 100,000 제조·취급·저장: 3,500 제조·취급·저장: 3,500 제조·취급·저장: 1,500 제조·취급·저장: 2,500 제조·취급·저장: 3,500 제조·취급·저장: 3,500 제조·취급·저장: 1,000 제조·취급·저장: 20,000 제조·취급·저장: 20,000 제조·취급·저장: 20,000
--	--	---

비고

-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C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C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4.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 5.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u>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u>물질은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물질 각 각의 제조·취급·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ol 1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R = \begin{array}{c} C_1 \\ \hline T_1 \\ \end{array} \begin{array}{c} C \\ \hline T_2 \\ \end{array} + \begin{array}{c} C_n \\ \hline T_n \\ \end{array}$$

- 주) C_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 T_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

■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PSM) 구성 내용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⑤ 그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5)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에 대한 보존

○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을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보존 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3년	• 산업재해 발생 서류	모든재해	① 산업재해 기록서류(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 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 인 및 과정, 재해발생 방지계획 포함)	법 제10조 제1항	
	28 ^NT	3일이상 휴업재해	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 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AI 1 8	
5년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 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 발암성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법 제42조	
	• 건강진단 서류	에 관한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법 제43조	

■ 사업장 감독시 요구서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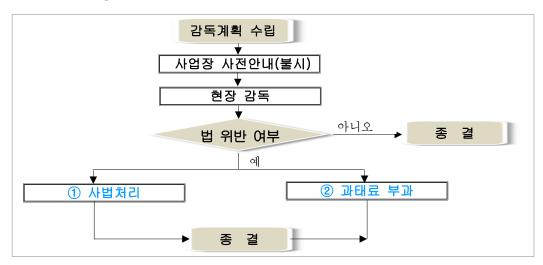
- 1.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관한 서류
- 2.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3.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관한 서류
- 4.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
- 5. 화학물질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6.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 8. 근로자 명부
- 9.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관련서류

(16)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하여 서류 확 인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 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장 감독절차

- ① 사법처리
 -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사업장 감독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시
 - 사업장 관계자 조사 ⇒ 입건(범죄인지보고) ⇒ 피의자심문(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건을 검찰에 송치
- ②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사업장 감독결과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시
 -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결정 ⇒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 ※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시 또는 의견진술시(과태료) 등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시



(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시 과 태료가 부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위반내용에 따라 30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 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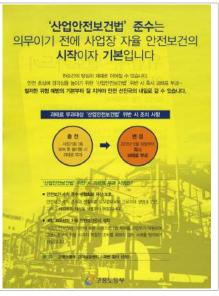
■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2011년 5월19일부터 적용)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일부) 〉

,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내용	법조문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신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 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 어 두지 않은 경우	세4앙세1오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 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법 제72조 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 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경우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하거 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5.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 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6. 법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 항을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7.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 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1명당)	3	5	10
8.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 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9.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 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0.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 상기 기준이외에도 과태료 기준이 있음을 유의(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참조)



1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고시 제 2012-104호, 2012,9,26 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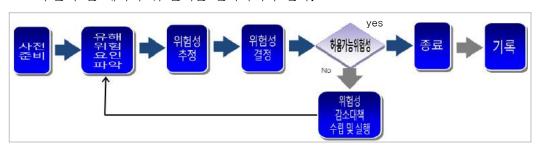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 제41조의2

-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하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가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계획(Plan) — 실시(Do) — 확인(Check) — 검토(Action)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주를 보좌하여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해야 한다.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위험성평가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액이 감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시 20%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교육을 받는 경우 10%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인정 유효기간 동안 유예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 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한다.

이는 취약업종 또는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 지침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독 및 실 시를 지시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인정사업장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 포상 또 는 표창 우선추천의 기회가 부여되며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5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다.

○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 「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및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및 기록
- 이행확인 및 지속적 개선
-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 지금까지의 안전보건관리방법과 다른 점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위험원,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어 「위험성(Risk)을 없애는 것」이다.

(2)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 (3)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설정 방법은?
 - 각 사업장별 적용기준은 법령, 고시·지침(guidance), 업계 기준(standards)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 이 정도까지 하면「우리 사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정기준 하에 위험성을 사정(査定)하여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4)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가역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의미
- (5)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은?
 -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 과거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작업 등 우선 선정

(6)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 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 ☞ 위험성평기에는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7)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 위험성평가 대상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6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그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연 1회)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법령에서 특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정기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평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 O (수시평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mark>(정기평가)</mark>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 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7

위험성평가 방법

(1) 실시체제

위험성평가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 (다)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 (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마)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2) 사업주의 책무

- (가)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된다.
- (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전달할 사업주의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행(D)-확인(C)-조치(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리감독자의 책무

- (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 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나)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계선(Line)상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부서장인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부서장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
 - (다) 사업장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직장, 조장, 반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담 당자로 적임자이다.

(4) 운영 방법

- (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 (나)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평가의 총괄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상황에 대한 책임자이고, 현장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등)는 위험성평가의 실행담당자가 되며, 안전·보건관리자(외부 전문가·기관)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자로서참여한다.
- (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 게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기관)로부터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외부 전문가(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말함

(5) 외부교육

(가) 사업주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2)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의 집체교육

4)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등

(나) 평가담당자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

2) 교육시간 : 16시간 내외(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8시간)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5) 교육대상 : 100명 미만 사업장. 120억(토목은 150억) 미만 건설공사

(다)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발표 및 토론 등

(6) 위험성평가와 유사 제도와의 관계

(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다음 제도를 이행하여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범위 및 절차,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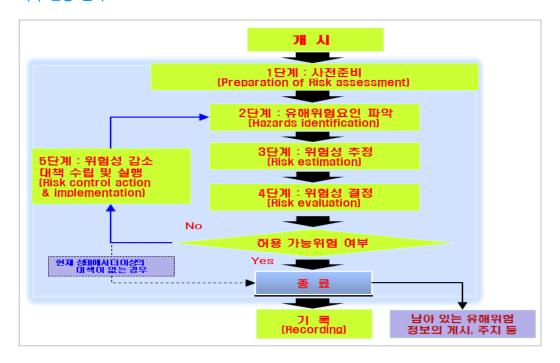
(나) 고시를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표 3〉 위험성평가와 유사제도와의 관계(예시)

구 분	관련 규정	제도 개요	관련범위(참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 법(이하 "법"이 라 함) 제48조	사업주가 사전에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건설업은 해당 작업시에 이행, 제조업 등은 해당 설비 설치시에 이행) (정부는 이행실태를 확인)	위험성평가 절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 분(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사전준비(평가대상 선정,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 진단	법 제49조	장관의 명령 또는 자체적으로 지정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 (명령에 의한 경우는 이행실태를 확인)	,
공정안전 보고서 (PSM)	법 제49조의2	사업주가 누출·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정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등관리)	해당공정(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법 제24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12장(제657 조~제662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정부는 감독 등을 통해 이행실태 확인)	근골격계부담작업(11 가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고시를 충족하 는 부분에 한함)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의2)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산재예방 노력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인정기관은 신청 사업장의 수준을 확인하고 인정)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8 위험성평가 절차

(1) 진행 절차



(2)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
- 〈1단계〉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 〈2단계〉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 〈4단계〉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
-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하고
 -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 어야 함.

○ 〈기록〉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 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

9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등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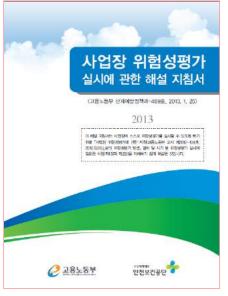
(1)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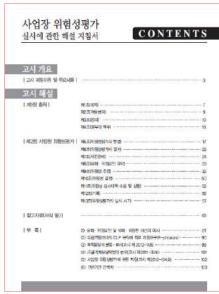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시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12.9.26, 제정]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고시에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또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 의 '행정규칙' 방이나 위험성평가 전용의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2)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해설 지침서"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을 실행함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지침서이다. 조문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알려 주고 있다. 위험성평가 전용의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3) "위험성지원시스템" (온라인)

중·소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전용의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지침 등 자료 다운과 위험성평가 가상체험을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관련 질의·회시

- (1) 안전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만으로는 제반 업무 모두를 명쾌하게 이해 하거나 업무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없다.
- (2) 이에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인들에게 질의·회시한 자료 를 발췌하여 제시하였으니 이를 참고하면 업무하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것이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질 의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 20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 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5.14.)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질 의

- 1.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 2.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 3.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 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국민신문고, 2010.10.01.)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질 의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긴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 2.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서비스 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산안 68320-2, 2000.01.03.)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 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 전관리자등】,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및 영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자격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산안 68320-179, 2000.03.03.)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총 공사금액이 72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 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 임의무가 있음
-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 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05.1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2000.8.5)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질 의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제2 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 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나.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산안 68320-429, 2000.05.22.)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질 의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와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 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3.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

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기관의 독립성 판단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를 그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 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45, 2000.05.31.)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질 의

수용전력은 4,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는지

회 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전력 2,000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 전력이 4,200kw라면 동법 제29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산안 68320-937, 2000.10.24.)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떻게(몇명) 선임하여야 하는지?(당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현업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2. 귀 공사의 경우 분소, 역 등의 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역무사무소,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등 현업기관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 「지하철현업기관설치운영내규」,「안전보건관리규정」,「위임전결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귀 공사 관련 운영규정에서
 - 현업기관의 장에게 관할구역 내 업무의 총괄 및 지휘, 노사업무 협조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소속직원의 인사 및 회계업무 관리, 교육계획 수립·실시, 직원의 출·퇴근, 결근 등의 복무관리, 업무(보직) 부여, 인력 배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 차량의 검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행,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 등의 업무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각 현업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현업기관은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3. 따라서 귀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1133, 2000.12.30.)

도소매업의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본사에 약 40명의 사무직원(영업사원 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110명 정도의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보건관리자와 안 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 1. 도·소매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으로 구분되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됨.
 -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나. 연간 1백만 킬로 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마.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2. 다만, 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산보 68307-233, 2001.04.18.)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2.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질 의

워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하고 자체 생산

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 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시

-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92, 2001.05.02.)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질 의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 인지

회 시

-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 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 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

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 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 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023, 2001.02.1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2000. 9. 28)에 따라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 변경(시행은 2001년 1월 1일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질 의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2.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자격자를 사업장에 직접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 동법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상주하여 보건관리를 전담토록한 동법 제16조는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임.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경우 동법상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업무의 외부위탁 규정을 엄격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일 반 영리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건관리상의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소위「절대금지업무」 임.
- 3. 따라서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견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 드림.
- 4. 덧붙여 귀 질의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민원인이 소속한 회사가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에 파 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됨.

(산보 68307-88, 2001.02.16)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 시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 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영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항, 영 별표3 제22호 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100, 2001.02.21.)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영 별표3]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 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1. 아파트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됨.
- 2. 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

(산안 68320-110, 2001.02.27.)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 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재직증 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현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5, 2001.03.08.)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질 의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 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 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2.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132, 2001.03.16.)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질 의

30~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 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2001.03.20.)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질 의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 서류상 원 청 안전관리자로 해 놓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산안(건안) 68307-10325, 2001.07.18.)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종업원수는 130명 정도이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 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만으로 그 업종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동통신 기지국 유지보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통신업(대분류) 중 전기통신업(중분류)으로 소분류로는 "무선통신업(6422, 무선전화, 무선호출,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2.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 격증 사본)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안 68320-316, 2001.07.24.)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소재 본사외에 지방 수개의 지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소재 본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수 관리직과 영업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영 별표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 중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541, 2001.08.07.)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산 업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 1.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특조법」이라 함) 제28조 제1항제7호에서 "교통 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조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업 중 특조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없으며,
- 2. 지난 1999.2.5. 교통안전법 개정에서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으로 완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운수업의 안전관리자선임자격(영 별표4 제10호라목)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1999.2.8) 하였으며, 자격의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교통안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서 채용하는 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선임된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된 자격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관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

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63, 2001.08.20.)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설의 보유주체인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업체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3. 외근 및 A/S, 창고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 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별표1에 의한 일부적용 업종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설비 등을 사용하 는 사업장은 전부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어 안

- 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산안 68320-371, 2001.08.22.)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공사 착공 서류를 제출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 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3. 참고로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 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산안(건안) 68307-10423, 2001.09.03.)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병원 및 호텔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1. 병원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 분류)에 해당되고,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5호에 의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나 이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 용대상 사업장임.
 - 따라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영 별표3) 및 보건관리자(영 별표5)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 호텔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분류) 중 숙박업(소 분류)에 해당되며,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에 의하여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가. 최고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나. 연간 1백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마.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1이라도 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 임하여야 함.

(산안 68320-408, 2001.09.11.)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 의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 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 1.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 관 중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 한지 여부
- 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1.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 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 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질 의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 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4명임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산만(건안) 68307-10561, 2001,11.21,)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지역에서 ○○통신에서 발주한 ○○전화국 연결 통신 구 터널공사(쉴드공법)를 1998년 8월 16일부터 2003년 1월 1일(2차분 준공예정일) 까지 1차계약분, 2차계약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종의 터널공사가 진행중인바,

당사에서는 1차공사시 상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 및 발주처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본공사의 2차계약시 발주처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차공사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 차공사에도 상주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이런 사유(동일한 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노동부에는 선임신고를 하지 않음)로 발주처인 ○○통신 본사에서 2001년 10월 하순경 현장지도 방문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의 적,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질의

회 시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질 의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 1.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2.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2.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 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u>안전관리자</u> 해임 시 제출 서류

질 의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92, 2001.12.06.)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 여부

질 의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 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 1.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 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3.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1.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원~70억원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질 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원, 공사기간이 1999. $12\sim2007$. 12m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억원에 해당(800억원 이상 2인, 7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매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는지(단, 전체공사기간의 시작과 종료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놓되 년차별 공사 진척에 따른 누계 공사비가 800억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2,339 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 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 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에 공사금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액 153억원으로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정이약 20% 정도로서 공사비 또한 약 20억원 정도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시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05.11.)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 여부

질 의

총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2억원과 B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 1.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 2.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A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24, 2002.05.20.)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 여부

질 의

공사비 63억원의 A현장 및 25억원인 B현장은 각각 별개의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0억원 이상이 되어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개 현장은 120억원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용대상인데

- 1. 이 경우 안전관리 외주 여부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직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정 이 가능하다면 자격요건은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만 두어도 되는지 여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 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음
- 2. 위의 현장은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워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A, B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 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함

(산안(건안) 68307-10243, 2002.05.28.)

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질 의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 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253, 2002.05.31.)

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 하도급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 1.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 2.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2.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관리책임자 등 선임 등 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06.12.)

지급 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 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 공사비 4,949,976,000원임.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경우에는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1, 2002.06.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질 의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 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8, 2002.06.25.)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질 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 간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37, 2002.07.19.)

※ '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의무선임자인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완화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 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 (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임)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 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 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40, 2002.07.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 지역 항만공사('98. 11. 9~'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 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바 현장사정에 따라 2인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인건비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8307-10356, 2002.07.25)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질 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할 경우

- 1.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 2. 건설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 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 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고용관리과(503-9749)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362, 2002.07.26.)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질 의

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으로써 서로 다른 발주처(조합)로 구성된 같은 단지내 두 개의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착공계도 각각 제출하였음. 시공 및 현장관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체계, 관리하에서 시공하고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기간이 동일함 1.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1명씩만 선임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명 씩 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1명씩만 해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는 합쳐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정산해 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 장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

- 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 및 정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질 의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 나머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이런 경우 본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현장에 산재한 근로자를 묶어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보아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 (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1, 2002.10.09.)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 의

(재)○○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 사·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인지

회 시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 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 2003.02.03.)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질 의

총 공사구간이 20km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 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 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 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 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1.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 2.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 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64, 2003.03.12.)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 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 1.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 2.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 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 2.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 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4, 2003.05.15.)

물가 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질 의

당 공사는 고속도로 현장으로써 최초 공사금액 765억원으로 시공중 설계 변경건으로는 감액이 되었고 물가 변동지수를 적용한 결과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음

위와 같을 경우 설계내역의 증가 없이 물가 변동지수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 서상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바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 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62, 2003.06.12.)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 여부

질 의

-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 2.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카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 2.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07.21.)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1. ○○중학교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 ○○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 ○○아파트 신축공사 금액 250억원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사가 동일한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인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 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 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인 기술지도 대상공사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 사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
- 2. 유선 확인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42, 2003.08.13.)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인력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 1. 저희 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지?
- 2. 저희 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제조업(봉제 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 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47, 2003.09.01.)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질 의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A현장은 150억원이 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현장이고(자체공사), B현장은 약 50억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현장이 아님 거리로는 약 3~4km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 사는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270, 2003.09.09.)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질 의

당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298명 정도이며, 인접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이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 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2공장을 모두 관리 할 수 있는지

회 시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373, 2003.09.23.)

※ '10.11.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을 종전 '같은 읍·면·동' 지역에서 '같은 시·군·구' 및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 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귀 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62, 2005.07.14.)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질 의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산업안전팀-1759, 2005.12.14.)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시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화학제품 제조업일 때 동일 지역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지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공동선임이 가능한 지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5, 2007.02.01.)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질 의

공공기관으로 ○○도 ○○군청 실과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업무는 보건정책사업 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 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 사업장으로 봄

<을설>

위 별표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 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7, 2007.02.01.)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 의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사용 용량은 300킬로와 트 미만이지만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도시가스법에 의거 가스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 시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산업안전팀-915, 2007,02.2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 의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제작/납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수주금액 중에서 현장 설치공사 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

가령, 당사에서 150억원에 수주하여 A,B,C,D,E,F의 6개 국내자동차설비 전문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업무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회 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6, 2007.02.21.)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질 의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10호 가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위에서 말한 자격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는 지(식료품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는 별개라고 생각됨)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1급 자격 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945, 2007.02.22.)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 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공중보 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1의 제5호 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으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장으로 분류되어 보건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원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이면 영 별표1의 제4항의 해당요건(가 - 바 항목)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및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영별표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산업안전팀-949, 2007.02.22.)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질 의

총 공사금액이(도급액) 1,100억원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철근공사 부분)를 12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하도급 대비 원도급 공사금액 125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119억원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다만, 공사 시공과 관련되는 자재비(레미콘 31억원, 유로폼 등 가설재비 30억원) 61억원을 도급인(원청)이제공]

- 1.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은 60억원이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자재비(유로 폼 등 가설재 30억원, 레미콘 31억원)가 시가 환산액 61억원일 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도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므로 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 을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은 지급자재로 포함하여 91억을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병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모두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121억원으로 본다
- 2. 하도급계약 금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 3.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하도급에서 투입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외 기타 사용된 안전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4. 노동부 점검 및 감독 시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및 사법처분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 시

1.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 계획서 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따라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2.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 계획서 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다만,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3.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선임(하도급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따른 소요인건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공사 시행관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은 사업주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행정 및 사법처리 처분됨. 다만, 중대재해조사 관련 직접적인 원인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원·하도급업체에서 선임된 각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412, 2008.10.24.)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질 의

○○공업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경력으로 안전관리 초급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위해【영별표4】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공업경영과"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안전관리초급기술자" 경력이 【영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해당되는지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1998.12.31.까지의 교육에 한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영별표4】안전관리자 자격 제5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공한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전공한 공업경영과(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귀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취득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경력증은 건설기술관리법의 목 적에 따른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19, 2009.04.01.)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질 의

-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회 시

- 1. 기특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

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299, 2009.04.09.)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 등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 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 1.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관리 및 주변환경정비(2명 근무)
- 2.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8명 근무)
- 3. 화장장에서 화장 및 납골업무, 화장실 및 환경정비(5명 근무)
- 4. 공영주차장 주차 및 징수업무(총 16명 근무)
- 5.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 등(101명 근무)
- 6.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서비스 지원(3명 근무)
- 7.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긴급구조(4명 근무)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법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를 [영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동 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시가지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8차 개정)상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903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04.14.)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 여부

질 의

「○○○○ 부설공사」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지

※ ○○대학 환경안전과 졸업자 ○○○(졸업일자: 2003.2.15.)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학력인정등에 관한 법률 ('97.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 학력인정 표준 교육과정 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력인정 학점 및 과목 중 전공(전공필수 포함)분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득한 자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대학 "환경안전과"는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의 이수학점이 28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98, 2009.06.02.)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질 의

택시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Time off)제도에 의하면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 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참여·신고·추천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안전관리자(법 제15조)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 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제2항)

이에 따라 귀 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에 속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

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07.29.)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질 의

상시 근로자수 140명의 택시운송업체에서 父子가 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인 모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있어 아들이 부친의 결재를 받는 등 부친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아들을 동 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위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이 실질적인 권한 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과-535, 2010.09.02.)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 의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시작 후 15%에서 공사시작의 의미는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 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 의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 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안전·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질 의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인원 산정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또는 별표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09.29.)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질 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 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 \sim E 5$ 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06.13.)

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대상인지

질 의

- 1.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 조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 동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제8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안정 68301-355, 2003.04.28.)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연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계약 완료 후 다음연도 차수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참 고>

- (1) 당 현장 전체공사 계약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
- (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
- (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예정
- (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회 시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전체공사 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계약

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3, 2001.02.20.)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 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시 노동부 선임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사착 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 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 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1.03.07.)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당 현장은 한국○○공사에서 발주한 원유 비축기지 건설공사 임. 총 공사금액 1,630억원으로 년차계약으로 시행중 안전관리자 법적선임은 3명이 되나 금년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1번 항목 안

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기준요율을 적용시 금액이 부족하여 $1\sim2$ 명만 선임할 수 있음(1차분). 이럴 경우 법적여건을 갖출 수 없는데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최종 준공시 전체 안전관리비에 사용기 준을 맞추어 사용할 수 없는지

회 시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82, 2001.05.09.)

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현장여건상 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 자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73, 2000.07.26.)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 여부

질 의

- 1. 당 사업을 ○○○시스템테크놀리지(유)에서 수주하여 수행함에 있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자 계열사인 (주)○○○에서 일부 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1인이 "안전관리자"역할을 수행토록 하였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그간 기성을 통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 받았으나 현 정산시에 감리단에서 인건비 증빙자료에 (주)○○○발행 급여명세서가 "인력파견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정산시 삭감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 정당한 법적용인지 또는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
 - (주)○○○은 ○○○시스템테크놀리지(유)의 지분 50%를 소유한 상호계열사로서 인력파견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식발령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을 받는 회사에 서 파견하는 회사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파견자 본인의 경우 원소속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음
- 2. 총 공사비가 494억의 공사로서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자 1명외 안전보조원 3명을 선임,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51개동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TRS 4대,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3대를 4개사 공동구입 및 사용, 기성을 통해 지급 받았으나 정산시에 MPK감리단에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 (별표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항목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및 카메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TRS 3대 및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2대의 비용을 삭감하고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및 TRS 각 1대만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시스

템테크놀리지(유)에 소속된 자로 당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동 기준 별표2의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41, 2001.04.16.)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 지출 여부

질 의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이상인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적용되는데 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60억으로서 공사 위험요소가 많아 전담안전관리자를 ○○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하였음. 이경우에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00%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6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아니나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한다면 위 사용기준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월 급여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35, 2001.06.02.)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5번(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 중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트북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퍼스날컴퓨터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 북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53, 2001.09.18.)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현장 안전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하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1, 2001.10.24.)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 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 2.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 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기 및』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1.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2.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당사는 1,000억원 공사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3명을 법적기준이상 선임 운영하고 있음. 협력사 하도급액 30억원으로 협력사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없이 전담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43, 2001.11.13.)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안전관리팀의 안전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 야 하는 기회가 많아 관련 업무 수행시 비용이 발생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항의 출장비 등 관련 비용에 "숙박비 및 일비(출장시 일당식으로 지불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11, 2001.12.13.)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 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 <갑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 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을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병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01.17.)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0, 2002.04.10.)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구 남부 지방 노동 사무소에 전담 안전관리자로 신고하여 월별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 제출시 급여전액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감독부서)에서는 자체 규정을 들어 안전관리 전담대상(건축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도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로써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여 급여전액 안전관리비 사용을 불허하고 있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한 공사에서 국가계약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발주처 자체규정이 먼저인지 그리고 발주처에서 전담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120억 미만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전담은 안되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노동부에보고하면 월급여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

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 체결시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당사자간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27, 2003.07.29.)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질 의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의한 퇴충금이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당사에서는 퇴충금 산정시 타 현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법적으로 퇴충금 산출에 대한 문제는 없음)

이에 퇴충금 산정시 타현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정산된 퇴충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퇴충금 산정방식이 있는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일) × 당해 현장 근속일수/365(일)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58, 2003.08.28.)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질 의

공사현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 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
- 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시 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 1. 귀 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2. 전담 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가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061, 2007.04.18.)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질 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안전순찰 전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 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이 불가능함

(산업안전팀-5307, 2007.11.15.)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

(사용기준)제1항 및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업무를 전담할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 업무만을 전담 할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882, 2012.03.22.)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하였는 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안전 보조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 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자가 선임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동 기준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 등을 겸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로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3, 2001.06.30.)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 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3, 2005.09.30.)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질 의

- 1.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1인이 여러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각 사업 장(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2.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공사비에 계상하고 실투입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도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거 추가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하는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현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적으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 가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 위험도,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 리자를 추가로 선임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외 다른 법 적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질 의

공사금액이 95억원인 건설공사로써 2001. 2월 착공예정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하는 개정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

는바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 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산안(건안) 68307-927, 2000.10.21.)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 배치하였고 건설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급여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2000. 9. 28)으로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6, 2001.02.28.)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까지 있음. 현재 1차 공사가 진행중임. 1차 공사의 금액은 약 125억원 정도임. 수의 계약으로 연차 공사가 진행이 됨. 그리고 얼마전 수의 계약형식으로 공사금액 약 16억원의 현장을 추가로 수주를 하였음. 이럴 때 추가 수주 현장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별도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1차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초과 또는 미달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2차 공사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지

회 시

귀 질의의 경우 추가공사가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기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동 공사가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 부기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사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 또는 미달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73, 2001.05.04.)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 여부

질 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137, 2007.06.25.)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 읍, 면, 동 지역 안에서 2 개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갑설)

- A현장의 공사금액 40억원, B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현장) 및 60%(B현장)로 나누어 사용함(을설)
- 두 현장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 (병설)
-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

회 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안전관리자가 안전 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50, 2003.08.20.)



□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13년)

●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 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 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신설 2013.8.6, 시행일 2014.1.1〉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❸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2조제1항 관련)⟨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 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제5호·제9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 원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 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통신업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제5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3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700억원이 증가할 때 마다 또는 상시 근로 자 600명 을 기준으 로 300명 이 추가될 때마다 1	선임하되,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 제4호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선임할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제4호 또는제5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 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 에 속하는 3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시행일 2015.1.1] 제40호

사업의 종류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 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기공제품 제조압기계 및 기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가구 제조업 18.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9.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20.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제조하는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 외한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2. 농업, 임업 및 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26. 도시철도 운송업 27. 도매 및 소매업 28. 숙박 및 음식점업 29.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0. 방송업 31. 통신업 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 처리업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6. 보건업 37. 골프장 운영업 38. 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9. 세탁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 여야 한다.
40.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 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 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 여야 한다.

⑤ [별표 6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신설 2013.8.6〉 [시행일 2014.1.1]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3)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야간작업(제98조제2호 관련)(개정 2013.8.6,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일이 틀림)
- 야간작업(2종)
 -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시행일 : 해당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 시행규칙 별표 13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야간작업)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아간작업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3) 임상검사 및 진착 ② 실형관계: 혁안 공본혁당 당화혁색소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3)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 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 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기계: 관련 증상 문진	야간작업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 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 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기경

□ 주요 시행규칙 별지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위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란에 '[√]'표시를 합니다.								
관리(산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명				지사명			
	업종				근로자 수			
	소재지							
사업체	생산품							
	사업장 구분	[]원·도급	[]1차 수급 []2차 수급	[]그 밖의 사항()		
	건설업만 원	· 도급업체명			공사 종류			
	기재 공	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재해발생 개요	발생일시				재해 발생 지역(부서)			
재해발생	인적 피해	사망 ()명, 부상()명	물적 피해	천원		
피해	조업정지일							
	재해원인물체 · 물질							
재해 발생과정 및 원인	재해 유발 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의 기록 ** 재해 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행동 및 사원 과정 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재발 방지계획

(제2쪽)

※ 아래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직위)			성별 [[]남]여
재해자	입사일	Ę	1 9	월 일			같은 종류업	무 근속기긴	· 년	월	
	고용형태	[]상용 []파견직	[[]임시]자영업자	[]일 []그	용 밖의	[]시간 사항(제 [)]가족		
	근무형태	[]정상	[]2교대	[]33	고대	[]그 별	밖의 사항()		
	발생시점	[]정규작([]휴일근!]식사·휴식]시간외근무		작업 Z 그 밖의	선 []출토 리 사항(티근)			
	수행	평상시									
	작업공정	재해 당시									
ММ	• 내용	세에 당시									
산업 재해	발생형태		가해물	-		상하	종류(질병명	!)	상해 부위	(질병 부위)	
내용	작업형태	[]단독		방호설비		[]다	상	개인보호장] []대상	
		[]복수				[]비	대상		[]비대상	
		(명)		1	(4	설비:)			(설비:)
	7741	[]사망[]부상		[]재ਰ	해 당일	계속 작업	[]재:	해 당일 작업	법 불가	
	근로손실 출근하지 못한 일수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사업	<u> </u>				(서명 또	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	는 인)	

② 〈별지 제1의2호(1)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エピー			`1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	 버산품명
사업체	소재지						
기日제	근로자수	_				전화번호	
		총	명 (남	명 /여	명)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안전관리자			기관명				기간
(안전관리	경력						
대행기관)	학력		학교				학과
	77						
	선임 등 연ㆍ월	• 일					
	전담·겸임구분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보건관리자	경력		기관명			,	기간
(보건관리							
대행기관)	학력		학교			Ī	<u></u> 학과
	의덕						
	선임 등 연ㆍ월	• 일					
	전담 • 겸임구분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기관명			7	기간
110111101	경력						
산업보건의							
	-174		학교			ġ	 학과
	학력						
	선임 등 연ㆍ월	• 일					
	선임 등 연·월 전담·겸임구분	· 일					
사업안전보건법	전담·겸임구분		 날이 보고서·	를 제출합니	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담·겸임구분	·일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	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❸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사업장명					사업장곤	·리번호		
	사업자등록번					전화번호			
HEIOL	소재지								
신청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호	번호		
	цоч	전자우편 주소							
설치장소				검사	· 희망일				
유해・위	험기계명	형식(규격)	용량		전 검시	l일		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	 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니행규칙 저	73조:	의2제1항에 I	따라 안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u> </u>			(서명 :	또는 인)
안전검	사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3
-14.13	010							고용노동부	
첨부서류	없음							정하는	=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 조	청서 남성 >	접수	▶ 서류	-검토		심사		결과통지	
신	청인	안전검사 기관		검사 관		!전검사기 관	1	안전검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4 〈별지 제13호 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변 소재지	Η̄Φ̄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FLELTI	성명		휴대전호	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담당 직원 확인사항	1.개인: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참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 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별지 제25호 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사업장 명					업종	
제출자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세돌사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작업 시작 0				공장(또는 실	널비)시운전 예정일	 <u></u>
계획사항	심사대상 공					.,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성명						
작성자	작성자 보유	자격					
계하다	Ип						
계획서	성명						
평가자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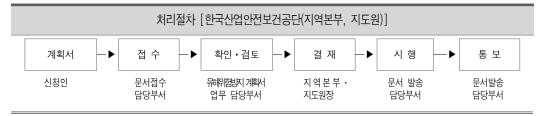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121조제1항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121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참조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려면 우리 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발행일 : 2014년 4월

발행인 : 백 헌 기

발행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

(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Tel: 052) 703-0693 Fax: 052) 703-0322

작성자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산업안전팀 차장 송태용

인쇄처 : 하늘기획(031-385-8818)

〈비매품〉